

# 해상 사이버보안 형식 승인 지침 개정(안)

(최종)

2020. 1.



기관규칙개발팀

# 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

(건조계약일 기준)

- 동등효력에 대해서는 규칙 1편을 따르도록 요건을 개정함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장 일반사항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일반사항</b></p> <p>101. - 102. &lt;생략&gt;</p> <p>103. 동등효력  <u>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104.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장 - 제 3 장 &lt;생략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장 일반사항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일반사항</b></p> <p>101. - 102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103. 동등효력  <del>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이 지침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의 동등효력에 대해서는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1장 104.를 따른다.</del></p> <p>104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장 - 제 3 장 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	<p>(개정)</p> <p>-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통합한 규칙 1편 개정에 따라서 동등효력에 대한 요건을 개정함.</p>